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실태조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추천 인사 참여 >
■ 소방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07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07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실태조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추천인사 참여(안 제25조제3항 신설)	3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221760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6. 3. 19.
3. 회 부 일 : 2026.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 장벽은 여전히 높으며, 동선상의 단차,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의 부정확성 등 실제 이용자가 아니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는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태조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실태조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추천 인사 참여(안 제25조 제3항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현행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 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제25조(실태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생략)	③ <u>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 방법·절차 등에----- -----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현행법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시¹⁾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는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개정안은 당사자인 교통약자의 실제 경험 등이 실태조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로서 교통약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이는 실태조사에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를 내실 있게 반영하여 효과적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현장 동행조사²⁾, 만족도 조사 등 실제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있음.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시 교통약자 동행조사 실시 현황(2021~2024) >

조사 대상연도	2021	2022	2023	2024
조사대상	고령자, 시각·지체장애인	시각·지체장애인	시각·지체장애인	시각·지체·청각장애인
조사장소	잠실역, 고속터미널역, 건대입구역	청량리역, 수원역	홍대입구역, 서울역	수원버스터미널, 대화역, 인천항 연안여객선터미널
표본 수	총 15명 (고령자 6명, 시각장애인 6명, 지체장애인 3명)	총 10명 (시각장애인 5명, 지체장애인 5명)	총 6명 (시각장애인 3명, 지체장애인 3명)	총 9명 (시각장애인 3명, 지체장애인 3명, 청각장애인 3명)
이동동선	1) 잠실역 : 대기장소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2호선승강장	1) 청량리역 : 대기장소 →이동 도로상태 →엘리베이터/계단 →기차 플랫폼	1) 홍대입구역 : 대기장소 →이동 도로상태 →엘리베이터/계단 →지하철 플랫폼	1) 수원버스터미널 : 대기장소 →도로상태→출입구 →매표소→안내시설 →탑승보조서비스

2) 교통약자 동행조사

- (조사목적)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여객시설을 이용하는 현장에 동행하여 이용 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안을 마련코자 함
- (조사방법) 밀착 관찰·기록하는 정성적 조사기법(Shadow Tracking) 활용
- (리쿠르팅) 전맹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 농아인 대상, 설문조사 시 현장조사 참여 의사를 확인하거나, 장애인 복지회관, 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적합 대상자(지역 및 장애 유형 등)를 확보함

조사 대상연도	2021	2022	2023	2024
	→8호선 환승통로 →종료 2) 고속버스터미널 대기장소 →버스정류장 →터미널(경부선) →김천행 승강장 →종료 3) 건대입구역 대기장소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2호선승강장 →7호선환승통로 →종료	→종료 2) 수원역 대기장소 →이동 도로상태 →엘리베이터/계단 →기차 플랫폼 →종료	→환승구역 →지하철 플랫폼 →화장실 →종료 2) 서울역 : 대기장소 →이동 도로상태 →엘리베이터/계단 →기차 플랫폼 →환승구역 →지하철 플랫폼 →화장실 →종료	→화장실→내부시설 →승강장→종료 2) 대화역 : 대기장소 →이동 시설 및 계단 →안내시설 →대화역6번출구 →매개시설 →중앙버스정류장 →화장실→안내시설 →노선도→종료 3) 인천항 연안여객선터미널 : 대기장소 →도로상태→출입구 →매표소→안내시설 →화장실→내부시설 →승선장→종료
조사시기	22.5.19~22.5.30.	23.9.25~23.9.26 23.10.5~23.10.6.	24.8.28~24.8.29.	25.11.4~25.11.6.

자료 : 국토교통부

또한,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유용성 확보를 위해 조사목적에 적합하고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원칙3)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 참여자 선정방식(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추천)을 제도화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3)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제8조(조사대상의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열람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내부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열람방법이나 그 밖에 행정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측면이 있음.

버스운송업계에서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 인사를 실태 조사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실태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목적 등 감안 시 교통약자의 참여는 필요하며, 현재도 매년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수행 중임.

다만, 법률에 실태조사 참여 인력 등 조사 방법을 한정하는 것은 조사의 유연성 확보 등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2)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실태조사는 국가 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립적 행위이나, 특정 단체 추천 인사의 직접 참여는 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추천 단체의 자격이나 검증 기준이 미비하여 추천 방법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불가능하며, 이는 행정 신뢰도 저하로 직결됨.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원의 참여로 인해 실태조사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 반영된 편향적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음.

3)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실태조사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객관성 및 중립성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사항임.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로부터 불특정인을 추천받아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전문성, 자격 등 추천 방법·절차에 관한 기준이 없기에 객관성 및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전문성이 없거나 한쪽으로 편향된 이가 추천을 통해 조사단에 참여하게 된다면 실태조사의 질적 수준은 하락할 것이며, 추천 집단의 편향적 결과만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음.

문 의 처
02)6788-5584

